

중소기업 기준

- ① 업종별 규모기준 :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
- ② 상한기준 :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,000억원 미만일 것

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)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| C14 | 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 | |
| 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| C15 | | |
| 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C17 | | |
| 4. 1차 금속 제조업 | C24 | | |
| 5. 전기장비 제조업 | C28 | | |
| 6. 가구 제조업 | C32 | | |
| 7. 농업, 임업 및 어업 | A | 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 | |
| 8. 광업 | B | | |
| 9. 식료품 제조업 | C10 | | |
| 10. 담배 제조업 | C12 | | |
| 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3 | | |
| 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6 | | |
| 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| C19 | | |
| 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0 | | |
| 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C22 | | |
| 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5 | | |
| 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C26 | | |
| 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C29 | | |
| 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C30 | | |
| 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| C31 | | |
| 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 D | | |
| 22. 수도업 | E36 | | |
| 23. 건설업 | F | | |
| 24. 도매 및 소매업 | G | | |
| 25. 음료 제조업 | C11 | |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|
| 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C18 | | |
| 2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 C21 | | |
| 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C23 | | |
| 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| C27 | | |
| 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| C33 | | |
| 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 | E(E36 제외) | | |
| 32. 운수 및 창고업 | H |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| |
| 33. 정보통신업 | J | | |
| 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| C34 | | |
| 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M | | |
| 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대업은 제외한다) | N(N76 제외) | | |
| 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Q |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| |
|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| R | | |
| 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S | | |
| 40. 숙박 및 음식점업 | I | | |
| 41. 금융 및 보험업 | K | | |
| 42. 부동산업 | L | | |
| 43. 임대업 | N76 | | |
| 44. 교육 서비스업 | P | | |

*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정의 및 지정요건

□ 기술·지식을 기반으로 혁신·고성장을 지향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3개 유형 중 하나에 해당(벤처특별법, 중기부 고시)

| 유 형 | 확인요건 | 기술성·사업성 평가기관 | 확인기관 (벤처확인증 발급처) |
|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벤처투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벤처투자기관*이 자본금의 10%** 이상 & 5천만원 이상 투자 * (투자기관) 창투사(조합),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,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일반은행, 개인투자조합, 사모투자전문회사 ** 문화콘텐츠 제작자인 경우 7%(‘07.4.23시행) | - | 벤처 캐피탈협회 |
| ②기술평가 보증·대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보 보증·중진공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 & 총자산액 대비 5% 이상 * (창업 1년 이내) 4천만원 이상, 총자산 비율 적용 제외 ** 보증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비율 적용 제외 ○ 기술성평가에서 총점 65점 이상, 기술성부문 31점(예비벤처 24점) 이상 * 예비벤처는 기술성평가만 적용 | 기보, 중진공 | 기보, 중진공 |
| ③연구개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○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& 총매출액의 5~10% 이상 *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○ 사업성평가 우수 | 기보, 중진공,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방기술품질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NICE평가정보(주) (주)웍스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다나 (주)크레더블 | 기보, 중진공 |

기술인증 획득기업

| 대상 | 인정 기간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가.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T* 인증기업 | 유효 기간 | * NET (New Excellent Technology, 신기술) :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 중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|
| 나.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P* 인증기업 | | * NEP (New Excellent Product, 신제품) :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|
| 다.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(GR*마크)인증기업 | | *GR (Good Recycled Product) |
| 라.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품질인증기업 | | |
| 마.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* 마크인증기업 | | * GH [Goods of Health Mark] :식품.약품.화장품.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기능을 엄격히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제품 |
| 바.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*기업 | | *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 |